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8년 1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2% 증가(전월대비 0.7%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2%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0.7%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8.9%), 통신·방송장비(-25.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7.5%), 기타운송장비(17.5%), 자동차(1.7%)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전월대비 1.9%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2.3%), 금융·보험(-0.5%) 등이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8.9%), 운수·창고(2.3%)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함(전월대비 0.2% 감소).

#### ◆ 2018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8%), 가전제품 등 내구재(0.2%) 판매가 모두 늘어 1.0% 증가함(전월대비 0.5% 증가).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4.4%)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5.5%)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함(전월대비 5.1%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하였음.

◆ 2018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 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8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

- 2018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5(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전월 대비 0.3%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4.2%), 음식·숙박(3.1%) 등 9개 부문에서 상승, 보건(-0.3%), 통신(-1.9%), 교통(-0.9%)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3%), 식품 이외(0.2%)에서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전월대비 0.8%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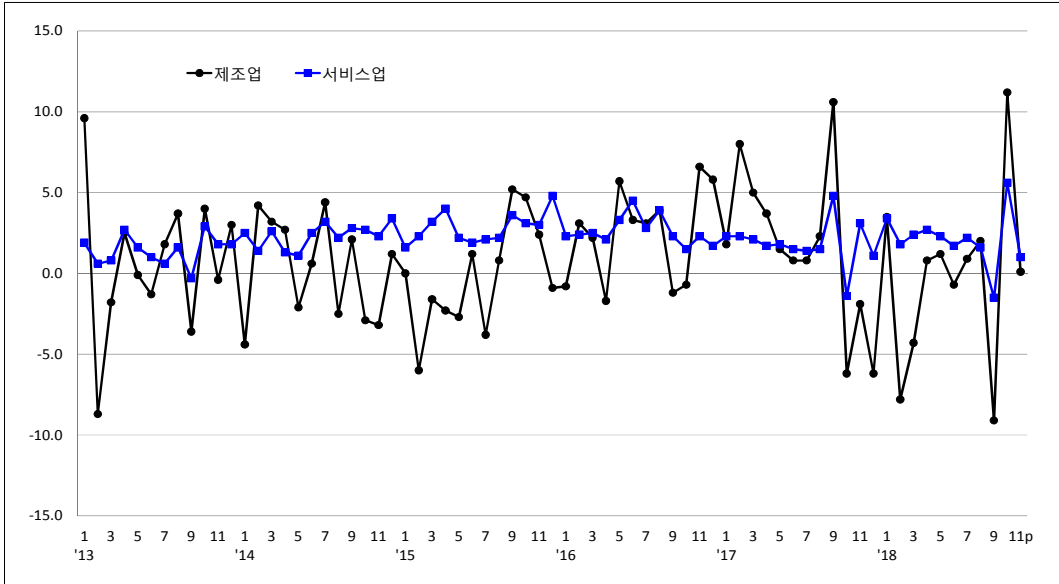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2017 11월	2018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p	11월p
생산	전산업	1.8	3.0	2.3	3.0	3.3	3.9	2.5	3.9	-0.7	0.7	1.2	-0.8	1.4	6.9( 0.8)	0.2(-0.7)
	광공업	-0.3	2.3	1.9	1.9	3.7	4.7	2.2	4.6	-3.8	-2.2	0.7	-1.8	-1.1	10.9( 1.3)	0.1(-1.7)
	제조업	-0.3	2.4	1.6	1.8	3.8	4.8	1.9	4.6	-4.8	-2.8	0.5	-2.3	-1.9	11.2( 1.1)	0.1(-1.9)
	건설업	5.0	15.4	10.1	14.5	17.7	17.7	13.6	12.7	-0.5	1.5	-3.4	-9.8	0.6	-3.1(-1.8)	-10.6(-0.9)
	서비스업	2.9	2.6	1.9	3.0	1.8	2.2	1.7	2.5	-0.9	2.6	2.3	0.8	3.1	5.6( 0.6)	1.0(-0.2)
소비	소비재 판매	4.1	3.9	1.9	3.1	2.2	1.6	1.0	3.2	2.1	5.0	4.7	3.9	5.3	5.1( 0.2)	1.0( 1.0)
투자	설비투자	6.9	-1.3	14.1	-4.7	5.9	18.2	17.8	20.6	2.0	9.4	-5.9	-13.6	6.7	9.4( 2.2)	-10.0(-5.1)
물가		0.7	1.0	1.9	0.7	1.5	2.1	1.9	2.3	1.5	1.3	1.5	1.8	1.4	2.0(-0.7)	1.3(-0.3)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5년, 2016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7년 11월, 2018년 10월, 11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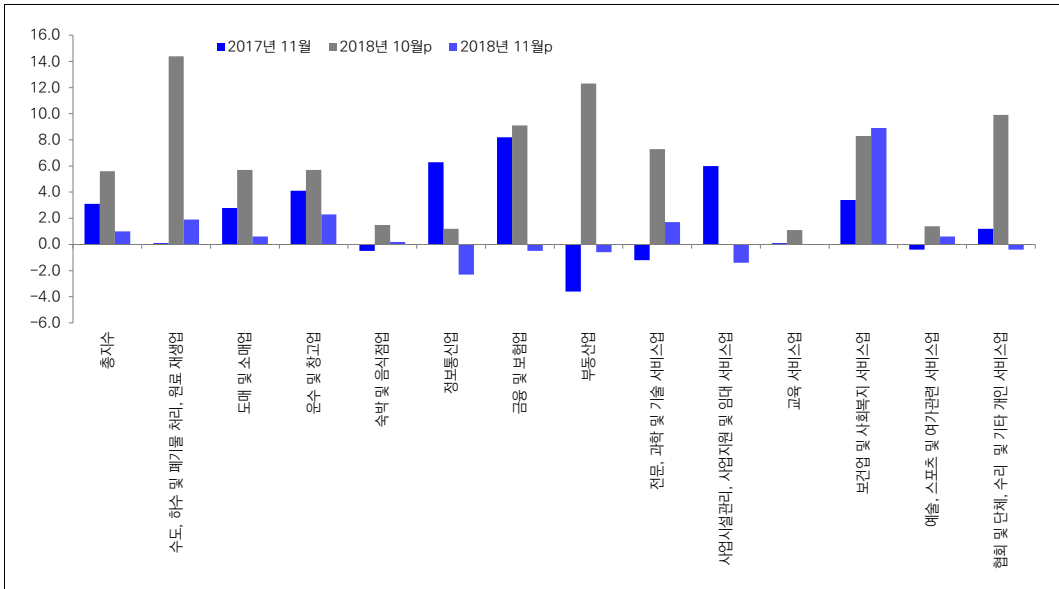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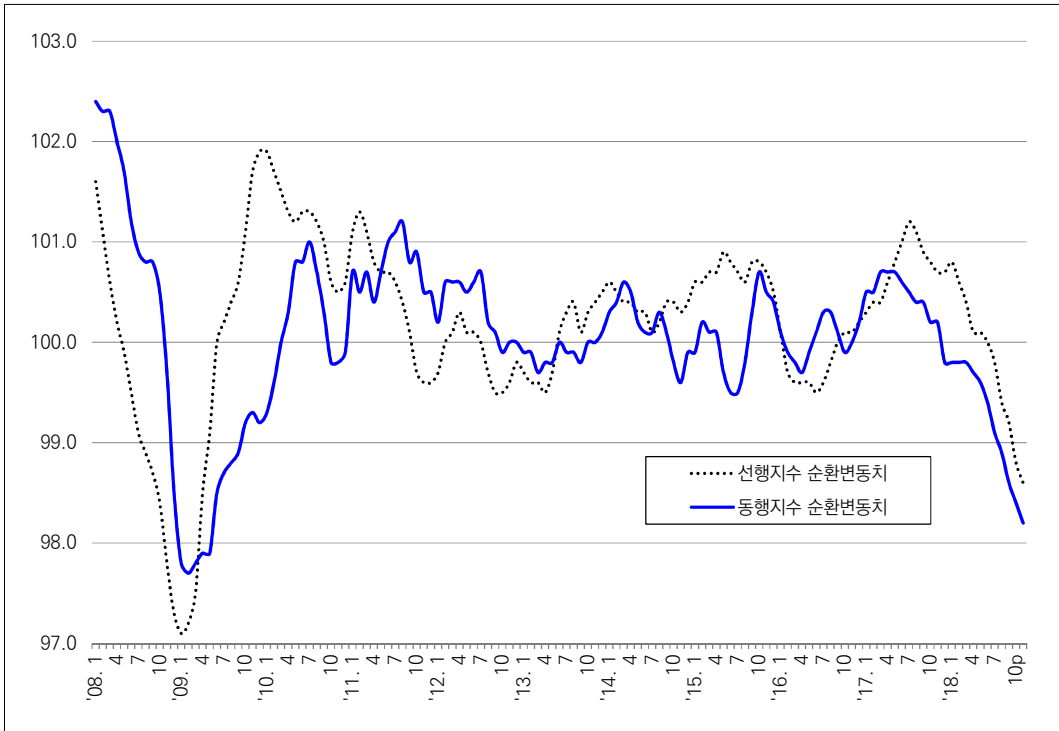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 = 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고용 동향

### ◆ 12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

- 2018년 12월 경제활동인구는 27,5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 명(0.2%) 증가함.
  - 취업자는 26,6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48천 명 증가하였으나, 남성 취업자 수는 14천 명 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1천 명 증가한 944천 명으로, 실업률은 3.4%(0.1%p 증가)로 나타남. 그중 남성 실업자(58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6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3.7%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358천 명)는 5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1%를 기록했음.
- 2018년 12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1.8%)은 0.1%p 감소했고 남성(73.0%)은 0.4%p 감소하였음.
- 2018년 12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음.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한 70.3%를 기록했고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50.2%를 기록했음.
  -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66.5%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6.4%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75.7%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2%p 증가한 57.1%를 기록했음.
- 2018년 1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0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증가하였고, ‘쉬었음’은 127천 명, ‘취업준비’는 74천 명 증가하였음. 반면 ‘재학’과 ‘수강’은 137천 명 감소하였음(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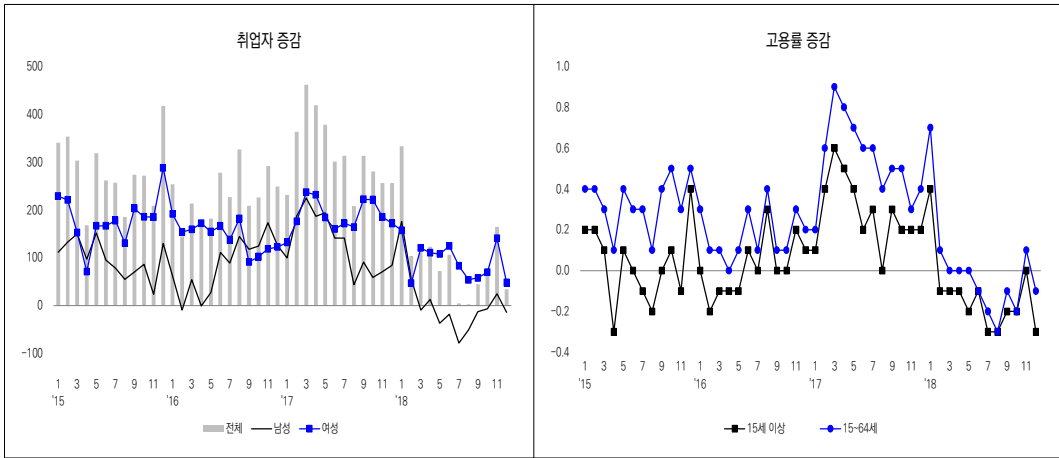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606	43,931	44,182	43,755	44,060	44,262	44,284	44,316
	(증가수)	(366)	(325)	(252)	(337)	(305)	(248)	(244)	(256)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895	27,211	27,516	28,063	28,092	27,582
	(증가수)	(265)	(329)	(148)	(246)	(305)	(143)	(203)	( 66)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6,347	26,604	27,090	27,184	26,638
	(증가율)	( 0.9)	( 1.2)	( 0.4)	( 1.0)	( 1.0)	( 0.2)	( 0.6)	( 0.1)
	(증가수)	(231)	(316)	( 97)	(249)	(257)	( 64)	(165)	( 34)
	(남성)	( 85)	(127)	( 4)	(126)	( 85)	( -7)	( 25)	(-14)
	(여성)	(146)	(189)	( 94)	(123)	(172)	( 70)	(141)	( 48)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2.2	62.5	63.4	63.4	62.2
	(남성)	(74.0)	(74.1)	(73.7)	(73.2)	(73.4)	(73.8)	(73.8)	(73.0)
	(여성)	(52.2)	(52.7)	(52.9)	(51.5)	(51.9)	(53.4)	(53.4)	(51.8)
	고용률	60.6	60.8	60.7	60.2	60.4	61.2	61.4	60.1
	(남성)	(71.2)	(71.2)	(70.8)	(71.0)	(70.8)	(71.1)	(71.3)	(70.3)
(여성)	(50.3)	(50.8)	(50.9)	(49.8)	(50.3)	(51.6)	(51.8)	(50.2)	
실업자	1,009	1,023	1,073	864	913	973	909	944	
실업률	3.7	3.7	3.8	3.2	3.3	3.5	3.2	3.4	
(남성)	( 3.8)	( 3.8)	( 3.9)	( 3.1)	( 3.5)	( 3.6)	( 3.4)	( 3.7)	
(여성)	( 3.6)	( 3.5)	( 3.7)	( 3.3)	( 3.0)	( 3.3)	( 3.0)	( 3.1)	
비경제활동인구	16,187	16,183	16,287	16,544	16,543	16,199	16,192	16,733	
(증가수)	(102)	( -5)	(104)	( 91)	( -1)	(105)	( 41)	(190)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39	36,860	36,796	36,856	36,843	36,786	36,782	36,788
	(증가수)	(134)	( 21)	(-63)	( 77)	(-13)	(-65)	(-68)	(-55)
	참가율	68.7	69.2	69.3	68.5	68.9	69.4	69.4	68.9
	(남성)	(78.9)	(79.3)	(79.1)	(78.6)	(79.0)	(79.0)	(79.0)	(78.6)
	(여성)	(58.3)	(59.0)	(59.4)	(58.3)	(58.7)	(59.6)	(59.7)	(59.1)
	고용률	66.1	66.6	66.6	66.2	66.6	66.8	67.1	66.5
	(남성)	(75.9)	(76.3)	(75.9)	(76.1)	(76.1)	(76.0)	(76.2)	(75.7)
(여성)	(56.1)	(56.9)	(57.2)	(56.3)	(56.9)	(57.5)	(57.8)	(57.1)	
취업자	24,342	24,559	24,511	24,417	24,528	24,588	24,671	24,455	
(증가수)	(149)	(218)	(-48)	(152)	(111)	(-91)	(-29)	(-73)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9. 1), 『2018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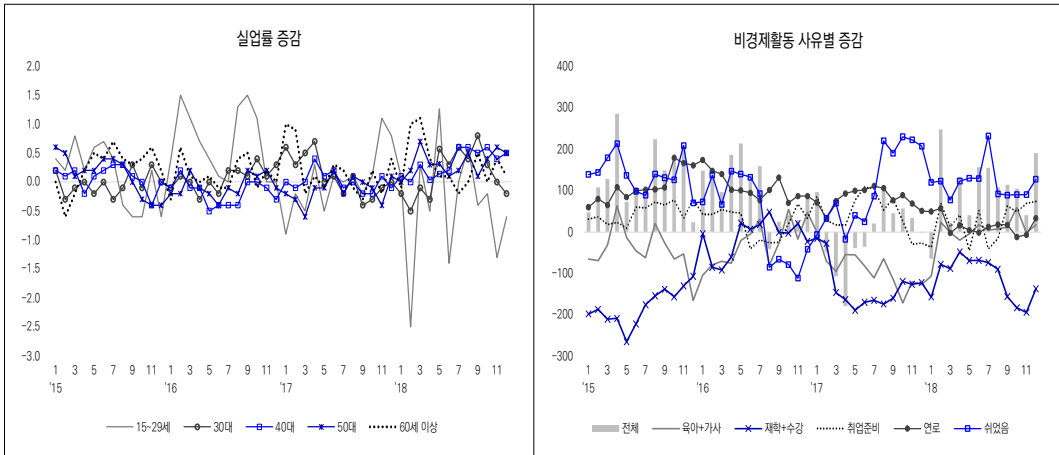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 20대 및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감소

○ 2018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71천 명, 1.9%)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감소하였고(11월 111천 명 증가), 30대(-103천 명, -1.8%), 40대(-135천 명, -2.0%) 연령층은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50대(31천 명, 0.5%), 60세 이상(203천 명, 5.0%) 연령층에서는 취

업자가 증가하였음.

- 20대 초반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2천 명 감소로 최근(10월 41천 명 감소, 11월 51천 명 감소)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20대 후반 취업자는 142천 명 증가함.
- 30대 연령층의 취업자 감소폭도 확대(10월 74천 명 감소, 11월 98천 명 감소)되어 12월 전년동월대비 103천 명 감소하였는데, 특히 3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에서 취업자 감소의 규모가 더 큼.
- 50대 연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전월(11월 270천 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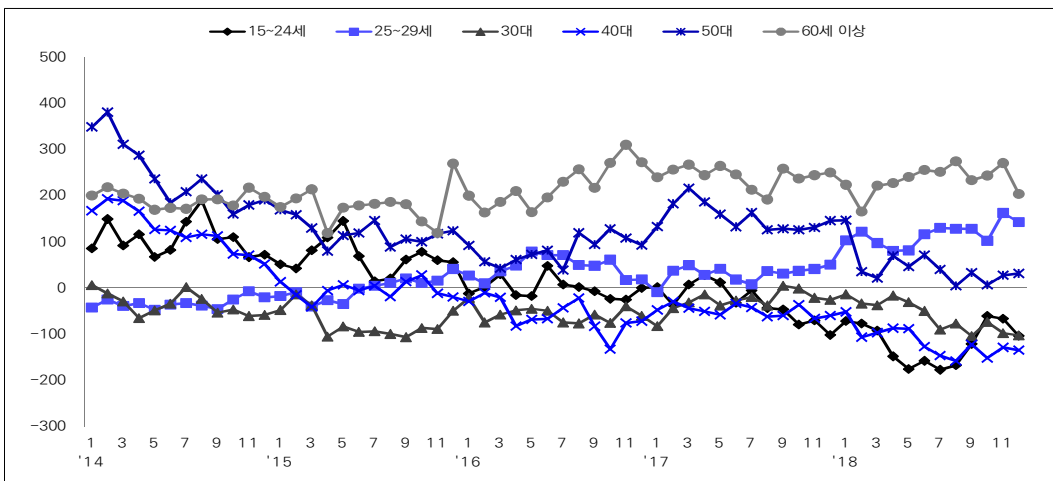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347 (249)	26,604 (257)	27,090 ( 64)	27,184 (165)	26,638 ( 34)
15~19세	244 ( -1)	247 ( 3)	205 (-42)	247 ( 2)	216 (-30)	181 (-20)	183 (-16)	184 (-33)
20~29세	3,664 ( 44)	3,660 ( -3)	3,699 ( 39)	3,652 ( 16)	3,630 (-22)	3,726 ( 61)	3,749 (111)	3,700 ( 71)
20~24세	1,402 ( 0)	1,368 (-34)	1,292 (-77)	1,395 ( -2)	1,323 (-72)	1,300 (-41)	1,283 (-51)	1,251 (-72)
25~29세	2,262 ( 44)	2,292 ( 30)	2,408 (116)	2,257 ( 18)	2,307 ( 50)	2,426 (102)	2,466 (162)	2,449 (142)
30~39세	5,672 (-57)	5,643 (-29)	5,582 (-61)	5,677 (-61)	5,651 (-26)	5,565 (-74)	5,558 (-98)	5,548 (-103)
30~34세	2,732 (-156)	2,593 (-139)	2,512 (-81)	2,684 (-160)	2,555 (-128)	2,513 (-40)	2,494 (-71)	2,492 (-64)
35~39세	2,940 ( 98)	3,050 (110)	3,070 ( 20)	2,994 ( 99)	3,096 (102)	3,052 (-34)	3,064 (-27)	3,057 (-39)
40~49세	6,832 (-59)	6,783 (-50)	6,666 (-117)	6,806 (-72)	6,746 (-60)	6,645 (-152)	6,664 (-129)	6,611 (-135)
50~59세	6,150 ( 82)	6,302 (152)	6,346 ( 44)	6,192 ( 93)	6,338 (146)	6,394 ( 6)	6,432 ( 27)	6,369 ( 31)
60세 이상	3,848 (223)	4,090 (242)	4,324 (234)	3,773 (272)	4,023 (250)	4,579 (243)	4,598 (270)	4,226 (203)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1), 『2018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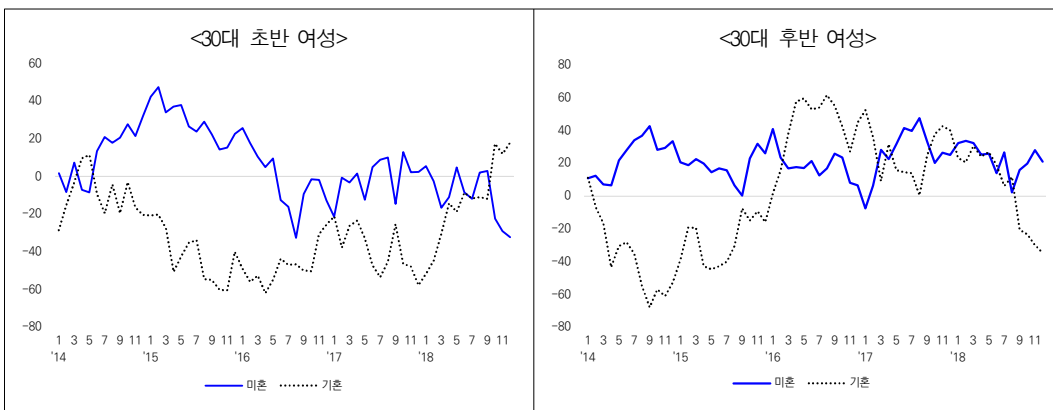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시직 감소폭 확대

○ 2018년 12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0,1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천 명(0.6%)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49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4천 명(-1.4%) 감소함.

- 2018년 1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33천 명, 51천 명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 감소하여 전월(11월 116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모습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월(11월 92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어 12월 전년 동월대비 69천 명 감소하였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2월 감소로 전환(12월 26천 명 감소, 11월 15천 명 증가)한 영향으로 비임금근로자는 전월(11월 83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확대된 94천 명 감소를 보임.
-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2월 전년동월대비 39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10월 197천 명 증가, 11월 129천 명 증가)되었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4천 명 감소로 전월(11월 298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 확대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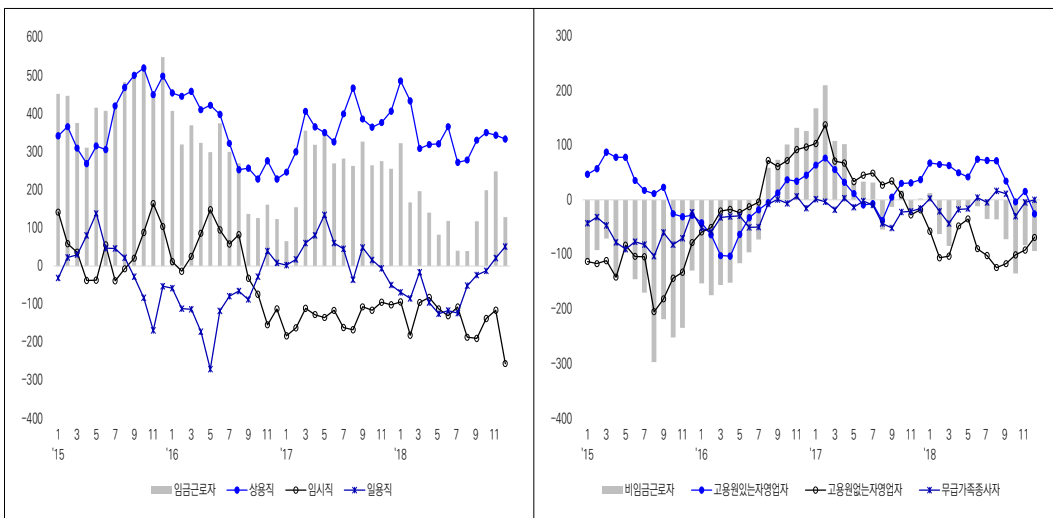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347 (249)	26,604 (257)	27,090 ( 64)	27,184 (165)	26,638 ( 34)
비임금근로자	6,740 (-36)	6,791 ( 51)	6,739 (-52)	6,584 (126)	6,586 ( 2)	6,817 (-135)	6,765 (-83)	6,493 (-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4 (-25)	1,608 ( 24)	1,651 ( 43)	1,605 ( 45)	1,642 ( 37)	1,650 ( -4)	1,659 ( 15)	1,616 (-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30 ( 17)	4,074 ( 44)	3,987 (-87)	3,966 ( 97)	3,948 (-18)	4,019 (-101)	3,972 (-92)	3,879 (-69)
무급가족종사자	1,126 (-27)	1,110 (-17)	1,101 ( -9)	1,012 (-16)	997 (-16)	1,148 (-30)	1,134 ( -5)	997 ( 0)
임금근로자	19,669 (267)	19,934 (265)	20,084 (150)	19,763 (123)	20,018 (255)	20,273 (199)	20,419 (248)	20,146 (128)
상용근로자	13,062 (346)	13,428 (366)	13,772 (345)	13,194 (228)	13,600 (406)	13,859 (350)	13,897 (343)	13,934 (333)
임시근로자	5,124 ( 10)	4,992 (-132)	4,851 (-141)	5,030 (-113)	4,928 (-102)	4,906 (-138)	4,955 (-116)	4,672 (-256)
일용근로자	1,483 (-88)	1,514 ( 31)	1,460 (-54)	1,539 ( 8)	1,489 (-50)	1,509 (-13)	1,568 ( 21)	1,540 ( 51)
1~17시간	1,267 ( 50)	1,362 ( 95)	1,520 (158)	1,315 ( 39)	1,506 (191)	1,500 (197)	1,512 (129)	1,545 ( 39)
18~35시간	3,220 (432)	3,051 (-169)	3,690 (639)	2,629 ( 25)	2,829 (200)	2,913 (371)	3,101 (320)	3,163 (333)
36시간 이상	21,509 (-257)	21,930 (421)	21,209 (-720)	22,096 (205)	21,950 (-146)	22,377 (-501)	22,271 (-298)	21,616 (-334)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0	42.8	41.5	43.3	42.5	42.0	41.7	41.5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1), 『2018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12월 전년동월대비 127천 명 감소(-2.8%)하여 감소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10월 45천 명 감소, 11월 91천 명 감소)

- 건설업(35천 명 증가, 1.7%)과 금융 및 보험업(14천 명 증가, 1.7%)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 11월에 비해 축소됨.
- 숙박 및 음식점업(39천 명 감소, -1.7%)은 전월(11월 59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30천 명 감소, -1.6%)도 전월(11월 44천 명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
- 공공행정 및 국방 취업자는 12월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한 수준으로, 11월 32천 명 증가에서 취업자 감소로 전환하였음. 부동산업 취업자가 2천 명 감소 (11월 11천 명 증가)하고, 예술·스포츠·여가의 취업자도 6천 명 감소(11월 11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들 역시도 전월에 비해 취업자 감소로 전환한 모습
- 농림어업(94천 명 증가, 8.7%), 정보통신업(94천 명 증가, 12%)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54천 명, 8.1%)도 전월(11월 164천 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
- 도매 및 소매업(63천 명 감소, -1.7%)과 사업시설·지원·임대(89천 명 감소, -6.5%)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26,409 (231)	26,725 (316)	26,822 ( 97)	26,347 (249)	26,604 (257)	27,090 ( 64)	27,184 (165)	26,638 ( 34)
농림어업	1,273 (-65)	1,279 ( 6)	1,340 ( 62)	1,010 (-28)	1,075 ( 65)	1,493 ( 57)	1,438 ( 84)	1,169 ( 94)
광업	19 ( 5)	23 ( 4)	19 ( -4)	21 ( 4)	23 ( 2)	15 ( -8)	16 ( -7)	16 ( -7)
제조업	4,584 (-21)	4,566 (-18)	4,510 (-56)	4,541 (-120)	4,618 ( 77)	4,515 (-45)	4,490 (-91)	4,491 (-127)
전기·가스·증기	76 ( -3)	72 ( -4)	70 ( -2)	78 ( -5)	71 ( -7)	63 ( -5)	64 ( -8)	64 ( -7)
수도·원료재생	113 ( 8)	115 ( 2)	127 ( 12)	113 ( 9)	117 ( 3)	139 ( 26)	132 ( 19)	129 ( 13)
건설업	1,869 ( 15)	1,988 (119)	2,034 ( 47)	1,956 ( 82)	2,039 ( 83)	2,090 ( 60)	2,118 ( 73)	2,074 ( 35)
도매 및 소매업	3,754 (-63)	3,795 ( 41)	3,723 (-72)	3,781 (-26)	3,774 ( -7)	3,699 (-100)	3,720 (-69)	3,711 (-63)
운수 및 창고업	1,426 ( -2)	1,405 (-22)	1,407 ( 2)	1,419 ( -8)	1,409 ( -9)	1,412 ( 5)	1,421 ( 0)	1,423 ( 14)
숙박 및 음식점업	2,291 ( 96)	2,288 ( -3)	2,243 (-45)	2,337 (111)	2,279 (-58)	2,189 (-97)	2,224 (-59)	2,240 (-39)
정보통신업	784 ( 10)	783 ( -1)	837 ( 55)	797 ( 19)	786 (-10)	863 ( 81)	867 ( 87)	880 ( 94)
금융 및 보험업	803 ( 4)	794 ( -9)	840 ( 46)	806 ( 6)	816 ( 11)	854 ( 49)	841 ( 33)	830 ( 14)
부동산업	483 ( 21)	540 ( 57)	528 (-12)	507 ( 37)	536 ( 29)	538 ( 5)	549 ( 11)	535 (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01 ( 47)	1,092 ( -9)	1,096 ( 4)	1,110 ( 18)	1,091 (-19)	1,096 ( 6)	1,109 ( 17)	1,097 ( 6)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91 ( 60)	1,374 (-17)	1,311 (-63)	1,387 ( 22)	1,368 (-19)	1,281 (-89)	1,290 (-91)	1,279 (-8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04 ( 55)	1,058 ( 55)	1,110 ( 52)	989 ( 38)	1,070 ( 81)	1,146 ( 31)	1,155 ( 32)	1,062 ( -8)
교육서비스업	1,862 ( 27)	1,907 ( 45)	1,847 (-60)	1,908 ( 48)	1,883 (-25)	1,870 (-15)	1,858 (-44)	1,853 (-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861 ( 80)	1,921 ( 61)	2,046 (125)	1,882 ( 76)	1,904 ( 22)	2,149 (159)	2,155 (164)	2,058 (154)
예술·스포츠·여가	407 (-21)	428 ( 22)	445 ( 16)	432 ( 30)	451 ( 19)	432 ( 0)	451 ( 11)	444 ( -6)
협회·단체·수리·기타	1,224 ( -8)	1,222 ( -3)	1,236 ( 14)	1,200 (-46)	1,220 ( 20)	1,198 (-32)	1,241 ( 30)	1,233 ( 13)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70 (-13)	64 ( -5)	48 (-17)	60 (-13)	64 ( 3)	41 (-18)	41 (-23)	44 (-19)
국제 및 외국기관	16 ( -2)	12 ( -5)	7 ( -5)	15 ( -5)	10 ( -4)	7 ( -5)	7 ( -3)	7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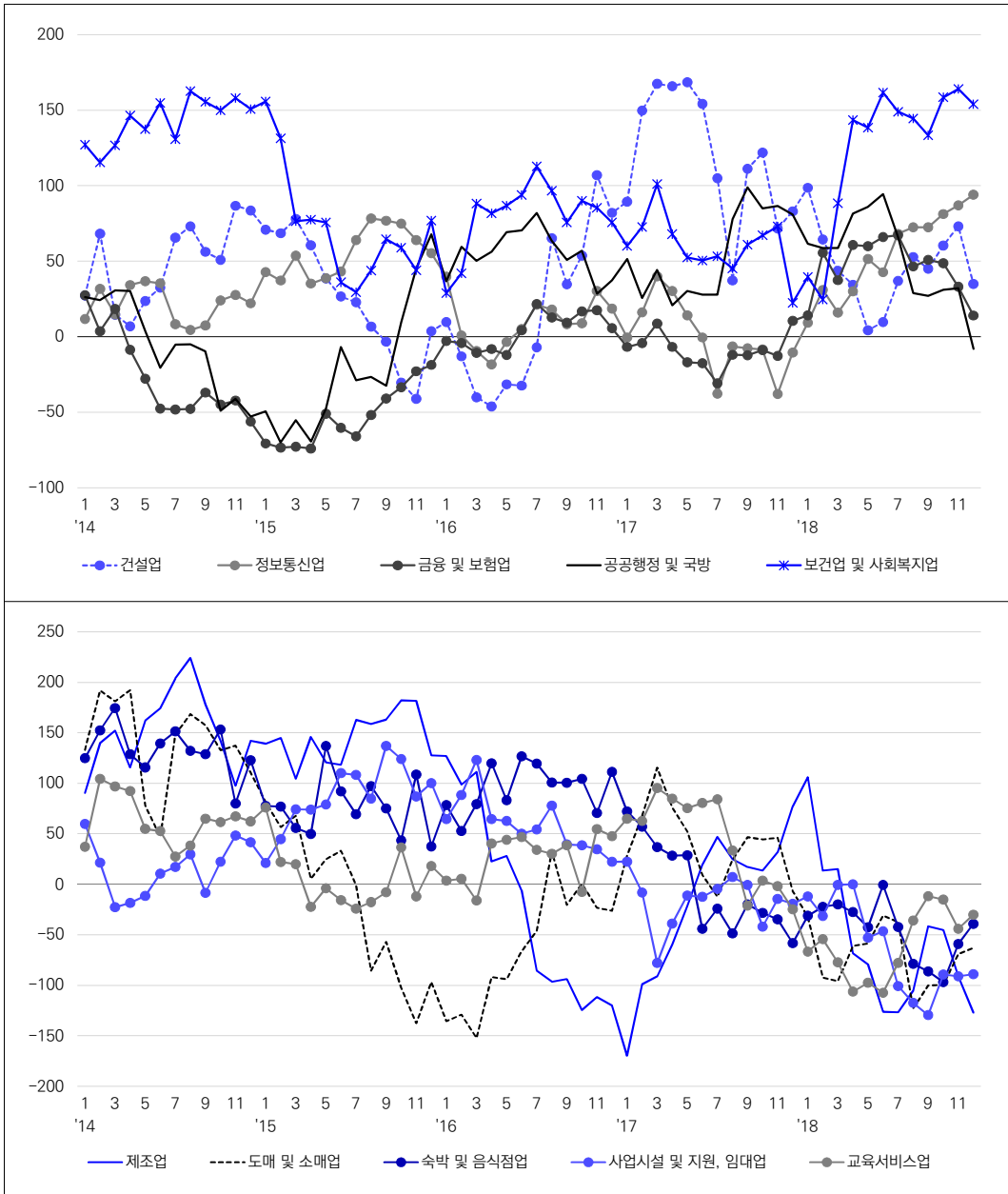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19. 1), 『2018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8년 10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2018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7천 원(3.3% ↑)임.
  - － 2018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한 3,364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7.0% 상승한 1,445천 원임.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 ◆ 2018년 1~10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5.5%, 4.0% 상승

- 2018년 1~10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60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5%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와 정액급여의 증가가 컸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2% 상승한 3,573천 원임.
  -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6% 상승한 1,419천 원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 2018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4.5%

- 2018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전년대비 0.8%p 상승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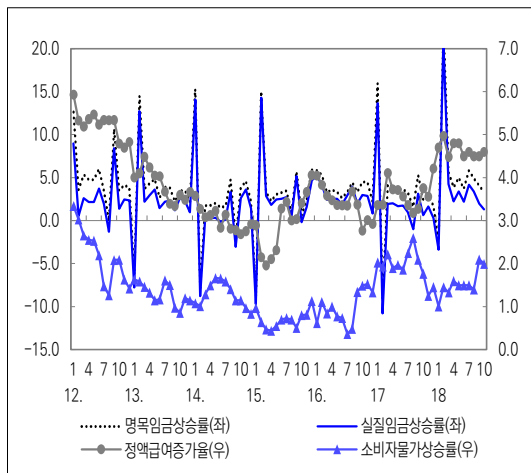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37 ( 3.4)	2,904 ( 2.4)	2,991 ( 3.0)	3,106 ( 3.8)	3,207 ( 3.3)	3,186 ( 3.5)	3,066 ( 2.5)	3,360 ( 5.5)	3,167 ( 3.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6 ( 3.3)	3,117 ( 2.3)	3,204 ( 2.8)	3,331 ( 4.0)	3,418 ( 2.6)	3,395 ( 2.8)	3,264 ( 1.6)	3,573 ( 5.2)	3,364 ( 3.1)
	정액급여	2,433 ( 3.8)	2,506 ( 3.0)	2,580 ( 3.0)	2,668 ( 3.4)	2,764 ( 3.6)	2,749 ( 3.5)	2,752 ( 3.8)	2,551 ( 4.7)	2,877 ( 4.6)
	초과급여	154 ( 1.3)	170 (10.5)	181 ( 6.2)	189 ( 4.2)	190 ( 0.6)	190 ( 1.1)	198 (-1.4)	196 ( 3.4)	217 ( 9.7)
	특별급여	458 ( 1.3)	440 (-4.0)	443 ( 0.6)	475 ( 7.2)	464 (-2.2)	456 (-0.5)	315 (-12.8)	500 ( 9.6)	270 (-14.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47 ( 3.3)	1,253 ( 0.5)	1,281 ( 2.2)	1,288 ( 0.6)	1,353 ( 5.1)	1,344 ( 4.8)	1,351 ( 4.2)	1,419 ( 5.6)	1,445 ( 7.0)	
소비자물가지수	98.3 ( 1.3)	99.1 ( 1.3)	100.2 ( 0.7)	101.6 ( 1.0)	103.0 ( 1.9)	103.4 ( 2.1)	103.4 ( 1.8)	105.5 ( 1.4)	105.5 ( 2.0)	
실질임금증가율	2.1	1.1	2.3	2.8	1.3	1.4	(0.7)	4.0	(1.3)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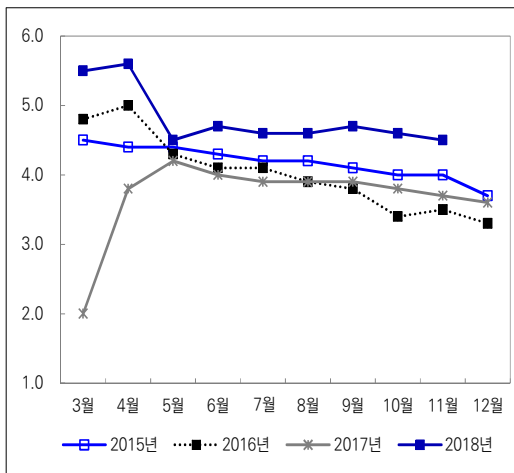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8년 10월 대규모 사업체 전년동월대비 임금 플러스 전환

- 2018년 10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9%, 0.2%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하여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임시·일용직인 비상용직의 임금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6.9%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여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며, 비상용직의 임금은 7.4% 상승에 머물러 상승폭이 둔화됨.

◆ 2018년 1~10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큰 폭 증가

- 2018년 1~10월 평균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8%, 6.8% 상승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는 상용직의 정액급여(4.8%↑)와 특별급여(16.1%↑)의 증가에 기인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5.4%)·대규모 사업체(7.9%)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5	2016	2017	2017		2018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 규모	소 계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65 ( 4.7)	2,774 ( 4.9)	3,002 ( 4.8)	2,881 ( 3.9)
	상용임금총액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65 ( 4.7)	2,956 ( 4.1)	3,198 (11.6)	3,064 ( 3.6)
	정액급여	2,414 ( 2.7)	2,495 ( 3.3)	2,602 ( 4.3)	2,590 ( 4.3)	2,592 ( 4.3)	2,711 ( 4.7)	2,715 ( 4.7)
	초과급여	148 ( 5.2)	160 ( 7.5)	164 ( 2.5)	164 ( 3.0)	167 ( -1.9)	171 ( 4.5)	187 ( 11.8)
	특별급여	291 ( 4.1)	310 ( 6.7)	316 ( 2.0)	305 ( 3.2)	197 ( 5.7)	315 ( 3.3)	162 (-17.8)
	비상용임금총액	1,277 ( 2.4)	1,286 ( 0.7)	1,350 ( 5.0)	1,339 ( 4.6)	1,351 ( 3.9)	1,411 ( 5.4)	1,444 ( 6.9)
대규모	소 계	4,849 ( 3.7)	4,959 ( 2.3)	4,983 ( 0.5)	4,966 ( 0.9)	4,682 (-3.3)	5,301 ( 6.8)	4,691 ( 0.2)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145 ( 0.3)	5,122 ( 0.8)	4,854 (-3.7)	5,464 ( 6.7)	4,859 ( 0.1)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98 ( 2.3)	3,567 ( 2.0)	3,575 ( 2.9)	3,711 ( 4.0)	3,685 ( 3.1)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2.1)	325(-1.6)	354 ( 2.0)	324(-0.3)	365 ( 3.1)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23(-4.5)	1,231(-2.0)	924(-24.1)	1,429 (16.1)	809 (-12.4)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 6.9)	1,417 ( 7.4)	1,356 ( 8.2)	1,528 ( 7.9)	1,457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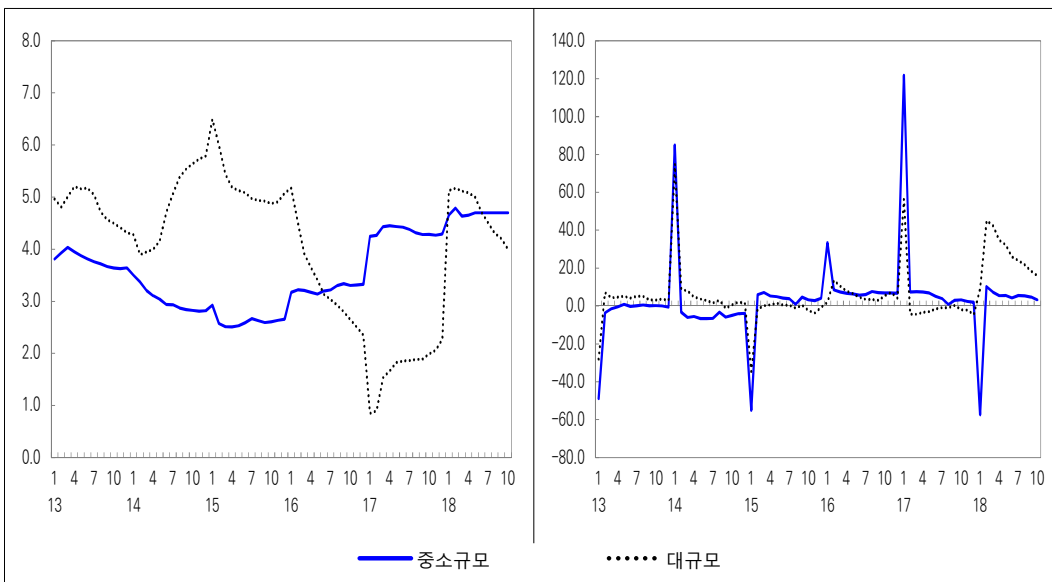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6~2017년) 및 자동차관련산업(2017~2018년)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2018년 1분기, 7~8월)과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 지급(3월)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2018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8년 10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음식점업(7.4%)이었으며, 건설업(7.3%), 여가관련서비스업(6.5%), 하수·폐기물(5.3%)도 평균 임금상승률(3.3%)을 크게 상회함.
  -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 교육서비스업(-0.1%) 부문은 임금이 감소함.
  - 10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063천 원)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1,749천 원).

◆ 2018년 1~10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8.3% 상승

○ 2018년 1~10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8.3%)이었으며,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9%), 금융 및 보험업(6.6%), 제조업(6.6%)도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은 가장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1~10월 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233천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57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6	2017	2017		2018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업	3,106 (3.8)	3,207 ( 3.3)	3,186 (3.5)	3,066 ( 2.5)	3,360 (5.5)	3,167 ( 3.3)
광업	3,678 (2.7)	3,713 ( 1.0)	3,707 (1.5)	3,393 ( 3.1)	3,831 (3.3)	3,492 ( 2.9)
제조업	3,603 (4.1)	3,690 ( 2.4)	3,664 (2.9)	3,507 ( 0.2)	3,905 (6.6)	3,654 ( 4.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300 (8.2)	6,281 (-0.3)	6,121 (0.4)	4,919 ( 3.7)	6,233 (1.8)	4,850 (-1.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78 (5.3)	3,089 ( 3.7)	3,058 (3.9)	2,995 ( 3.2)	3,231 (5.7)	3,153 ( 5.3)
건설업	2,507 (3.1)	2,624 ( 4.7)	2,610 (4.5)	2,532 ( 4.0)	2,769 (6.1)	2,718 ( 7.3)
도매 및 소매업	2,880 (3.9)	3,049 ( 5.8)	3,020 (6.1)	2,892 ( 4.8)	3,194 (5.8)	3,021 ( 4.4)
운수업	3,023 (4.9)	3,156 ( 4.4)	3,132 (4.1)	3,140 ( 5.2)	3,346 (6.8)	3,257 ( 3.7)
숙박 및 음식점업	1,570 (1.5)	1,626 ( 3.6)	1,622 (3.5)	1,629 ( 4.1)	1,757 (8.3)	1,749 ( 7.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78 (3.3)	4,122 ( 3.6)	4,094 (3.4)	3,951 ( 3.1)	4,270 (4.3)	4,029 ( 2.0)
금융 및 보험업	5,499 (4.0)	5,706 ( 3.8)	5,617 (3.3)	4,910 ( 3.3)	5,988 (6.6)	5,063 ( 3.1)
부동산 및 임대업	2,383 (5.7)	2,446 ( 2.7)	2,433 (2.7)	2,375 ( 2.5)	2,591 (6.5)	2,497 ( 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44 (5.8)	4,492 ( 1.1)	4,462 (2.1)	4,335 (-3.7)	4,706 (5.5)	4,385 ( 1.1)
사업서비스업	2,049 (4.0)	2,088 ( 1.9)	2,080 (2.0)	2,084 ( 3.5)	2,197 (5.7)	2,180 ( 4.6)
교육서비스업	3,231 (1.1)	3,316 ( 2.6)	3,342 (2.2)	3,133 ( 6.1)	3,434 (2.8)	3,128 (-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75 (3.4)	2,671 ( 3.7)	2,659 (3.7)	2,650 ( 6.6)	2,788 (4.8)	2,743 ( 3.5)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3 (5.2)	2,512 ( 6.8)	2,475 (6.3)	2,461 ( 9.6)	2,642 (6.7)	2,621 ( 6.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67 (5.4)	2,240 ( 3.4)	2,229 (3.8)	2,199 ( 0.8)	2,383 (6.9)	2,308 ( 4.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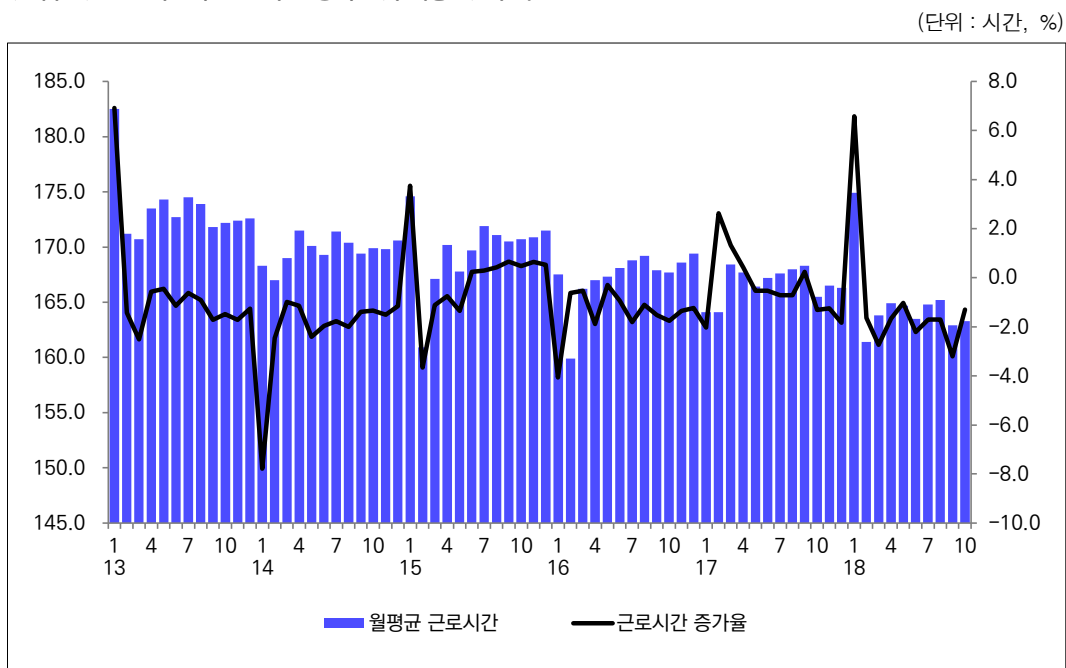
◆ 2018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6.9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5.9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3.3(+19.4%)일 증가)

- 2018년 10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 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한 166.9시간임.
  - 추석이 2017년에는 10월 초였고, 2018년에는 9월 말에 있어 근로일수가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8.7시간 증가한 174.8시간이었고,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증가함.
  -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2017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함.

◆ 2018년 1~10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0.2일 감소)

- 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0.1일 감소한 데 영향이 큼.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0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증가

- 2018년 10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7.3시간(18.1% ↑), 대규모 사업체는 165.0시간(20.2% ↑)으로 나타남.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소정실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한 155.9시간임.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시간 증가한 13.3시간이었으며,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24.5시간으로 0.5시간 증가함. 제조업 내 중분류 중 2017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산업 대부분은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 2018년 1~10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은 163.4시간(-1.5%), 대규모 사업체는 162.6시간(-0.7%)으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10월	10월	1~10월	10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8(-1.2)	166.6(-1.9)	165.9(-1.4)	141.7(-15.0)	163.4(-1.5)	167.3(18.1)
	상용 총근로시간	178.4(-0.7)	174.4(-2.2)	173.5(-1.6)	147.2(-16.2)	171.3(-1.3)	175.9(19.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8.3(-0.9)	164.7(-2.1)	163.8(-1.6)	137.4(-16.6)	162.2(-1.0)	166.1(20.9)
	상용 초과근로시간	10.1( 2.0)	9.7(-4.0)	9.7(-3.0)	9.8(-9.3)	9.1(-6.2)	9.8( 0.0)
	비상용근로시간	108.6(-5.9)	105.7(-2.7)	105.7(-2.8)	98.8(-6.6)	99.4(-6.0)	99.6( 0.8)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9(-1.6)	164.4(-1.5)	163.7(-1.0)	137.3(-15.7)	162.6(-0.7)	165.0(20.2)
	상용 총근로시간	170.8(-1.7)	167.7(-1.8)	166.8(-1.3)	140.7(-16.2)	165.7(-0.7)	169.3(20.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7.0(-0.8)	155.4(-1.0)	154.4(-0.5)	127.5(-16.9)	154.0(-0.3)	155.9(22.3)
	상용 초과근로시간	13.7(-11.0)	12.3(-10.2)	12.4(-10.1)	13.1(-9.0)	11.7(-5.6)	13.3( 1.5)
	비상용근로시간	85.5(-1.6)	90.3( 5.6)	92.4( 5.7)	71.8(-2.0)	90.6(-1.9)	83.3(16.0)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0월 근로일수 증가로 모든 산업에서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

- 2018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금융보험업(27.4%)에서 가장 많이 증가함.
  - 다음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6%),

교육서비스업(25.0%) 순으로 근로일수 3.3일 증가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

- 2018년 10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3.9시간),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83.7시간)이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0.8시간)이었음.

○ 2018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전년동평균대비 근로시간이 증가했으며, 이외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8년 1~10월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3.1%)이었으나 여전히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0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10월	10월	1~10월	10월
전 산업	169.4(-1.2)	166.3(-1.8)	165.5(-1.3)	141.0(-15.2)	163.3(-1.3)	166.9(18.4)
광업	177.9(-1.0)	175.8(-1.2)	174.8(-0.6)	150.1(-12.2)	175.5( 0.4)	183.9(22.5)
제조업	183.1(-1.0)	179.8(-1.8)	178.9(-1.2)	151.5(-16.8)	176.3(-1.5)	182.1(20.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7.7(-1.9)	164.9(-1.7)	163.1(-1.6)	123.9(-23.5)	160.6(-1.5)	142.4(14.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0.5)	177.1( 0.0)	176.2( 0.6)	153.0(-12.7)	177.0( 0.5)	183.7(20.1)
건설업	142.0(-1.3)	141.9(-0.1)	141.5( 0.4)	120.7(-12.6)	138.0(-2.5)	140.8(16.7)
도매 및 소매업	170.2(-1.9)	167.6(-1.5)	166.8(-1.1)	142.3(-14.3)	164.4(-1.4)	167.0(17.4)
운수업	172.9(-0.9)	169.2(-2.1)	168.6(-1.7)	151.0(-11.0)	166.1(-1.5)	169.9(12.5)
숙박 및 음식점업	165.7(-3.9)	160.4(-3.2)	160.0(-3.0)	148.3( -9.4)	159.3(-0.4)	162.8( 9.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2.8(-0.7)	160.9(-1.2)	159.9(-0.6)	129.3(-18.7)	160.7( 0.5)	164.5(27.2)
금융 및 보험업	162.9(-0.9)	160.5(-1.5)	159.8(-0.7)	128.3(-18.3)	160.2( 0.3)	163.5(27.4)
부동산 및 임대업	189.0(-1.3)	184.9(-2.2)	184.2(-1.8)	162.7(-12.8)	178.4(-3.1)	181.6(1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2.9(-1.2)	160.1(-1.7)	159.2(-1.1)	129.2(-18.8)	159.6( 0.3)	163.6(26.6)
사업서비스업	170.2(-0.6)	165.1(-3.0)	164.2(-2.4)	144.0(-14.2)	162.6(-1.0)	165.9(15.2)
교육서비스업	147.5(-2.1)	144.4(-2.1)	144.0(-1.5)	115.3(-18.0)	142.0(-1.4)	144.1(25.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8.2(-1.5)	164.5(-2.2)	163.8(-1.6)	141.0(-14.3)	161.8(-1.2)	165.9(17.7)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2( 0.2)	159.5(-0.4)	158.6(-0.2)	141.6(-10.3)	157.2(-0.9)	159.9(12.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6(-0.5)	164.2(-2.0)	163.4(-1.6)	140.7(-14.2)	161.3(-1.3)	163.8(16.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8년 1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160건
  - 2018년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017년 동월(863건)보다 297건 많은 수치임.
- 2018년 12월 조정성립률 48.9%
  - 2018년 12월 조정성립률은 2017년 동월 성립률 58.6%에 비해 9.7%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7년, 2018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8. 12	1,160	1,128	501	209	292	524	37	487	17	86	30	48.9
2017. 12	863	839	443	188	255	313	47	266	16	67	24	58.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18년 12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4,080건
  - 2018년 12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017년 동월(12,706건)보다 1,374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2%(1,60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8%(10,594건)를 차지함.

〈표 2〉 2017년, 2018년 1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8. 12	14,080	12,199	1,391	214	2,096	823	4,068	3,607	1,874
2017. 12	12,706	11,094	1,245	190	1,919	756	3,916	3,068	1,60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18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72건
  - 2018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017년 동월(715건)보다 143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49.2%(267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8%(276건)를 차지함.

〈표 3〉 2017년, 2018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8. 12	572	543	257	10	78	29	169	0	29
2017. 12	715	685	84	5	50	25	521	0	3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유해업무 도급금지·원청처벌 강화’ 김용균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음.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며, 이는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나 배달노동자처럼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한다는 취지임.
  -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한 도급작업을 포함, 유해한 작업은 도급이 금지됨. 그러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 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음.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지금의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됨. 더불어 원청 사업장이 아니라도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함.
  - 원청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는 지금처럼 1억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짐.
  - 이어 법 위반 시 법인 대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산재사망이 발생한 뒤 5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

〈표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의 의미와 한계

개정안	의미와 한계
<p>◎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음.</p> <p>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위험이 있는 장소 22개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힘.</p>	<p>의미: 하청노동자의 사고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한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됨. 따라서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축소될 여지가 있음.</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음.</p> <p>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짓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음. ②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임. ③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감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한계: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와 가중처벌은 도입되었으나, 산재사망 예방효과를 보기 위한 처벌 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함.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원안에는 처벌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이 있었으나 삭제됨.</p>
<p>◎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음.</p> <p>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음.</p>	<p>의미: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으나 이를 보완함.</p> <p>한계: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음.</p>
<p>◎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p> <p>①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음.</p> <p>②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음.</p>	<p>의미: 기존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하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비밀로 삼아 왔음.</p> <p>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기업의 비공개 남발을 막을 수 있음.</p> <p>한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됨.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표 4〉의 계속

개정안	의미와 한계
<p>◎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 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음.</p> <p>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함.</p>	<p>의미: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이 도입되었음. 또한 건설 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 강화를 이번 도입에 도입한 것에 의미가 있음.</p>
<p>◎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음.</p>	<p>의미: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가 명시되었음. 이 정의에 따라 특수 고용, 배달 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 등이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게 됨.</p> <p>이는 기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음.</p>
<p>◎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p>	<p>의미: 이는 기업의 산재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므로 의미가 있음.</p>

◆ 서울시, 올해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

○ 안전분야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 2019년 1월 13일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2019년 1월 노동정책담당관 안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노동현장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함.
- 또한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시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와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행태와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청소업체 무더기 적발

○ 청소차 작업발판 설치·위험방지 작업계획서 미작성

-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한 지자체 40여 곳과 민간위탁업체 69곳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를 2019년 1월 13일 발표했다.
- 감독 결과,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작업발판)를 설치하거나 위험방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음.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 관리 책임자를 형사 입건했음.
-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민간위탁 55곳)에 4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은 “환경미화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표 5〉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사전준비	주의보	경보
기준		PM2.5 75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10 150 $\mu\text{g}/\text{m}^3$ 이상	PM2.5 150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10 300 $\mu\text{g}/\text{m}^3$ 이상
예보 기준	나쁨	매우 나쁨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군 사전확인 *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li> <li>■ 비상연락망 구축</li> <li>■ 유해성 주지 및 마스크 착용 교육·훈련</li> <li>■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 *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li> <li>■ 마스크 비치 (자율착용) (※예보기준 '나쁨'단계 이상)</li> <li>■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li> <li>■ 마스크 지급 및 착용</li> <li>■ 민감군에 대해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li> <li>■ 마스크 지급 및 착용</li> <li>■ 적절한 휴식 * 휴식하면서 깨끗한 음료섭취</li> <li>■ 중작업(重作業) 일정 조정 또는 단축</li> <li>■ 민감군 작업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부여</li> </ul>

자료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7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 보건의료 노사 “공동기금 1억 원 조성”

##### ○ 법적 사용자단체 구성 위한 노사 실무팀 구성

- 보건의료 노사는 2018년 12월 10일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에서 “노사 공동기금 1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노사 공동기금은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연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됨.
- 노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동기금 통장을 개설할 예정이고,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사실무팀을 구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임.
- 그 외 세부적으로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 등의 세부 합의안을 마련함.

#### ◆ LG유플러스 하청노동자 ‘자회사 전환’ 잠정합의

##### ○ 협력업체 노동자 2,600명 가운데 1,300명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

- 2018년 12월 16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지부는 12월 14일 오전 ‘홈서비스센터 고용형태개선 잠정합의안’을 체결했음.
- 회사는 협력업체 노동자 2,600명 중 800명을 2020년 1월 1일자로 자회사로 전환하고, 또 2021년 1월 1일까지 500명을 추가로 전환할 예정임. 2022년 이후 자회사 전환 여부는 노조와 논의하기로 했음.
-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노사합의 뒤 시행하고, 지역·직무 이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현상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에 운영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노사는 임금·복리후생 기준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전환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임

금·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임단협을 준용하기로 했음.

#### ◆ 국립중앙의료원 노사,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합의

##### ○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적용 첫 사례

- 2018년 12월 19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하였음. 이는 보건의료 노사가 2018년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사례임.
- 노사는 규모가 가장 큰 병동보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수납 분야와 콜센터·청소·주차 분야는 2019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 국민연금공단 1,231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

##### ○ 노조,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해야”

- 2018년 5월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17개 직종 비정규직 1,231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음.
- 공단은 2019년 1월 2일 “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사 387명과 IT 아웃소싱 용역노동자 58명,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행 기간제 22명 등 467명의 비정규직을 공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2018년 7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합하면 1,231명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힘.
- 노조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분들의 임금 제약이 큰데 이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고용안정은 이뤘으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음.

#### ◆ 한국노총 조합원 100만 명 돌파, 민주노총도 90만 명 도달

##### ○ 한국노총, “2018년 12월 조합원 101만 6,000명 달성”

- 2019년 1월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101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고, 201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조합원 수 97만 5,574명(2017년)을 기준으로 2018

년 4만 1,000여 명이 증가함.

- 최근 잠정 집계한 산별연맹별 2018년 신규 조합원 수를 보면 금속노련 1만 2000명, 공공노련 7,500명, 선원노련 7,000명, 공공연맹 4,100명, 식품산업노련 2,500명 등이고 각 지역본부에 가입한 조합원은 1,200여 명임.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는 노동운동과 한국노총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 중간노조와 미조직, 청년 조직화 등 전략 조직화에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 조합원 1년 전 70만 명에서 잠정집계결과 90만 명 도달

- 민주노총은 2019년 1월 말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약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했다.
- 민주노총의 가맹 조직인 서비스연맹 1만 명, 공무원 노조 3천 명, 건설노조 1만 명, 보건 의료노조 1만 명이 증가하였음.
- 민주노총은 해고 조합원의 복직 및 기타 변수들을 감안할 경우 전체 조합원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부에서 추산함.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제 노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전환을 위해 100만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200만 조직화에 나서겠다”고 밝힘.

#### ◆ 금융노사, “과당경쟁 자제 · 핵심성과지표 개선” 합의

○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에서 합의 도출 ...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실행방안 마련

- 2018년 12월 2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월 19일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회의에서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음.
-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KPI 평가항목을 축소하기로 했고,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 방식의 지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음.
- 또한 미스터리 쇼핑(소비자로 위장해 청구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 실시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감정노동을 불러오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KPI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음.
- 과로와 실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지목되는 프로모션 · 이벤트 · 캠페인 같은 마케팅을 축소하고 노조와 협의해 운영하기로 했고, 정부 · 공공기관 · 시도금고 · 공항 · 학교 · 병원 등 기관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하는 입찰경쟁은 자제하기로 했음.
- 노조 관계자는 “산별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부별 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조는 감찰단을 운영해 제도개선 논의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 ◆ 파인텍 고공농성 426일 만에 교섭타결

- 김세권 대표 사장 맡고 고용보장 ... 파인텍지회·스타플렉스 4월까지 단협 체결
  - 노동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 지회와 스타플렉스가 해고노동자 재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음.
  - 양측은 2019년 7월부터 스타플렉스 자회사인 파인텍을 정상 가동하고 이곳에 해고노동자들을 복귀시키기로 했음. 또한 지회 요구에 따라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사장을 맡고 최소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음.
  - 이날 합의에 따라 지회 조합원들은 1월부터 6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갖고, 양측은 4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음.
  - 회사는 노조사무실 제공과 5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음. 그리고 이날 합의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지회는 고공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음.

### ◆ 국민은행 노조 1만 명 19년 만에 파업

- 주요 쟁점은 ‘페이밴드·임금피크·성과급’
  - 2019년 1월 8일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페이밴드(Pay Band,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임금 동결)와 임금피크제, 성과급 등의 쟁점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됨.
  - 노조는 △신입행원들에게 적용된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함.
  - 사측은 △페이밴드 전 직원에 확대, △부점장과 팀장급 이하로 이원화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통합 조정 △보로금과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합쳐 300% 등을 제시함.
  - 노조는 이날 총파업 이후 노사 협상의 진전이 없을 시 1월 31일, 2월 1일 이틀에 걸쳐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3차 총파업은 오는 2월 26~28일, 4차 총파업은 3월 21~22일로 예정

### ◆ 계룡시, 기간제 8%만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

- 공공연대노조, “12월 말 계약만료 기간제 고용불안”
  -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지부는 2018년 12월 12일 오후 계룡시청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계룡시가 상시·지속업무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

김으로써 100명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계룡시는 제한경쟁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음.

- 충남 계룡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8개 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1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전환 대상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2명 △아동복지교사(40시간 근무) 1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시립드림지역아동센터(시설장) 1명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교육·전산코디네이터 3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명 △정신건강증진사업 1명임.
- 지부는 “올해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에 떠는 기간제 노동자들도 다수”라며 “계룡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잇단 ‘산재 확정’ 판결

○ 법원, 사측 상고 두 차례 기각 ... “수차례 징계가 주된 스트레스 요인”

- 지난해 12월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음.
- 육 씨는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한 그를 다시 징계하는 등 반복적인 징계와 지속적인 2노조와의 차별, 관리자들의 괴롭힘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음.
- 그 때문에 불안·불면·우울·비특이성 신체증상이 지속되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았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했음.
- 유성기업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를 제기했고, 행정법원과 2심 재판부는 육 씨의 손을 들어줬음. 그리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산재 신청 3년 6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
- 재판부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음.

###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 청탁 지원자 채용 위해 조직적 관리 지시

- 2019년 1월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음.
- 재판부 선고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이던 응시자 37명을 특혜 채용하였음.
- 재판부는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인사담당자가 합격자 초안과 청탁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알려줬고 이광구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청탁)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 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밝혔음.
-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 친인척인 경우”라며 “그를 정점으로 인사담당 임원과 인사부장, 채용팀장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음.

###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

#### ○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잠정중단 발표 …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할 것”

- 2019년 1월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전택노련·민택노련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완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확보 △감차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산업 모색 등과 같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육아휴직 도입 양극화 여전 … 대기업 93% vs 소기업 34%

- 육아휴직자 중 135만 원 미만 저임금군 비중은 6.2%에 불과
  - 2018년 12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7년 육아휴직 이용자는 9만 123명으로 집계됨.
  - 이번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지켰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준수했음.
  - 임금수준에 따른 격차도 컸고, 소득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를 보면 300만 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군이 20%, 210만 ~300만 원대 중간 임금군이 34%를 차지했음. 그러나 육아휴직자 중 135만 원 미만 저임금군 비중은 6.2%에 불과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은 육아휴직을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을 사용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만 썼음.
  - 한편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5%로 2012년(71.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천 개 창출”

- 산자부 업무보고서 밝혀 … “고용위기 4개 지역에서 14개 프로젝트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2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음.
  - 정부는 고용과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14개의 ‘활력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천 개를 만들 계획임.
  - 산자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처럼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산자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 모델·인센티브 패키지·참여주체 역할을 마련할 것”이라 밝힘.
  - 기업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사업에 지원을 하고, 합작회사·위탁생산·유턴기업과 같은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고, 대상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청년고용 지원, 산업단지 내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기숙사 임대료 지원,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 공정거래위, “원천 안전비용 부담·안전책임 명시”

#### ○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공정거래위는 2019년 1월 13일 9개 업종(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방송업·가구제조업·경비업·제지업(신설) 등)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힘.
- 공정거래위는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주체가 원청임을 명시하였으며,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음.
- 이와 함께,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가 만든 방송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안에 하청업체가 만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소유하도록 함. 또한 간접광고로 인해 콘텐츠에서 수익이 나면 원청-하청업체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하였음.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 고용노동부 장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발표했음.
- 개편안의 내용은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이원화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률 상·하한 구간을 정한 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
- 정부가 밝힌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방법은 두 가지인데, 노사정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기피하는 인물을 3명씩 순차 배제하거나,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임.
- 의결방식은 현재 방식처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임.
- 정부가 독점했던 공익위원 추천권은 국회 또는 노사 단체에 일부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하거나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해 순차 배제하는 식임.
- 이재갑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되던 최저임금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함.

〈표 6〉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행 및 개편안

현행	개편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노동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고용·경제상황: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상황, 경제성장률을 포함 등

자료: 고용노동부.

〈표 7〉 최저임금 결정체계 현행 및 개편안

현행	개편안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 요청 ▼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	최저임금위원장,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심의 요청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의결해 결정위원회에 제출 ▼
	결정위원회는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21명 또는 15명으로 구성) ▼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

자료: 고용노동부.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